

「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1월 13일, 지광천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지광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으로서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(안 제3조)
-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(안 제4조)
-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한도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-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(안 제7조)
- 미지급 및 환수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
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3조에서는

지원대상으로는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
규정하며, 다만 직전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
이상인 농업인은 제외하였습니다.

안 제4조에서는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

안 제6조에서는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한도

안 제7조에서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

안 제8조에서는 미지급 및 환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 시행으로

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강화 및
농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
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1부.

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2. “이자보조금”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①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대상사업)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.

1.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

2.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
3.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,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
4.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·보수 사업

제5조(이자보전율)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연체이자 는 제외한다.

제6조(지원한도 및 기간)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은 융자금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5년 이내로 한다.

제7조(협약체결)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미지급 및 환수)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
2.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
3.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, 타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
4.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제9조(준용)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